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근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1인)

찬 성 자: 김민성·김정도·김재우·소진혁
이명희·이상호·이지연·장미경
허민근 의원(9인)

1. 제안이유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현행화하며,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평생교육법」 제39조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나. 부서검토: 평생학습원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비문해자(이하 “비문해자”라 한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 등을 갖추지 못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중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및 결혼 이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평생학습원

조 례 명	구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해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 성인 문해교육 지원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성인 비문해자들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소요예산 : 안 제7조(경비의 지원 등)에 의한 보조금<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경비의 지원 등)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에 따른 사업 경비(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는 2025년 기준 14,000천원(교육부 공모사업) 및 14,000천원(프로그램 지원사업), 총 28,000천원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은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평생학습원 학습진흥팀 채주호(☎054-480-4335)